

현장 보고서

제목 : 「트랙터」 사고의 현장 보고

수입일 : 2015.07.03

보고일 : 2015.07.05

조사자 : 노 승 일

010-9445-3290

1. 신청인

부서명	중부	센터명	천안	담당자	장동환
-----	----	-----	----	-----	-----

2. 사고내용

사고번호	20150701-00107-20-001	사고일	2015. 07. 01(04:30)
피해물	트랙터 外	사고장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피해자	최정묵	수리업체	대성농기계

3. 추정 손해액

(단위: 원)

보상한도액	청구액(A)	추정손해액(B)	비고
1억	30,000,000	18,000,000	0%

4. 조사내용

본 건 사고는 2015년 07월01일(04:30)경 피보험차량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앞서가던 트랙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파손시킨 사고이며 피해물은 최정묵이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임을 확인하였다.

피해물인 트랙터는 대동 D65(65마력) 기종으로 "07년 10월경에 약 금6,5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사고일 기준 중고거래가격은 약 금1,800백만원 정도에 거래됨을 확인하였다.

파손 트랙터를 입회한 바 후면부를 충돌당하여 약 20M 튕겨 나가면서 우측 농두령으로 빠진 사고이며 상,하부 링크, 조인트, 뒤판넬, 휠, 타이어 등이 파손되었고 트랙터 전면부에 부착된 농기계(로우더)도 농두령으로 빠지면서 좌,우 프레임이 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트랙터 후면부에 부착된 로타베이터(220cm/세움제품)는 "11년 금60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중고시세가격은 금3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로타베이터와 연결되어 함께 파손된 베토기(도안제품)는 "07년 금2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중고시세가격은 금15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로타베이터 파손부위는 사고당시 농두령으로 빠지면서 충격으로 트랙터와 분리되어 지면과 2차 충돌로 땅에 박혀 중앙부분이 휘어졌고 베토기는 좌측 부분이 휘어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

피해물(트랙터, 로우더, 로타베이터, 베토기)에 대한 예상견적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선견적을 의뢰한 상태로서 각각의 피해물에 대한 중고시세가격 限度로 수리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휴차료 불만이 예상되어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6. 면,부책 판단 근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에 기인한 사고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직접손해에 한하여 차량 부책 사고임.

7. 피해물 현황(원경 및 상세 사진)



*트랙터 후면부 파손상태(1): 대동 D65마력



*트랙터 후면부 파손상태(2)



*상,하부 링크 外 파손

*캐빈 리어판넬 파손



*우측 엔진 사이드판넬 파손



*뒤우측 휠, 타이어 파손

*앞우측 휠, 타이어 파손



*우측 리어휠 커버 파손

*로우더 파손
 ⇒논두렁으로 빠지면서 좌측으로 휘어짐



*로우더 좌,우측 프레임 휨 발생



*베토기 파손

*베토기와 로타베이터 연결 프레임 파손



*로타베이터 중앙부분 파손

-끝-

현 장 보 고 서

제목 : 「건물」 피해물 사고의 현장 보고

수 임 일 : 2015.07.03

보 고 일 : 2015.07.05

조 사 자 : 노 승 일

010-9445-3290

1. 신청인

부서명	총청	센터명	서청주	담당자	유영학
-----	----	-----	-----	-----	-----

2. 사고내용

사고번호	20150702-02338-20-001	사고일	2015. 07. 01 (17:00)
피해물	건물	사고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211
피해자	범지기마을아파트	수리업체	미지정

3. 추정 손해액

(단위: 원)

보상한도액	청구액(A)	추정손해액(B)	비고
3억	미청구	30,000,000	0%

주1) 피해견적은 未제출 상태로서 직접손해는 청소& 도색& 방충망 교체 예상비용임.

4. 조사내용

본 건 사고는 2015년 07월 01일(17:00)경 피보험차량이 범지기마을아파트 10단지 1023동에서 피보험차량(사다리차)이 이사짐 운반 중 차량에서 오일이 유출되어 바람에 날리면서 아파트 건물 외벽 및 베란다, 보도 등을 오염 및 훼손시킨 사고이며 건물 소유자는 범지기마을 1023동 아파트 주민 49가 구로 확인되었다.

피해 아파트는 2014년 8월에 신축하였고 철근콘크리트 & 대리석에 새시 구조물의 25층 건물이며 이사하는 층수는 16층으로 사고당일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던 상황에서 유압오일이 사방으로 날리면서 1023동 외벽에 전체적으로 뿌려진 상태로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신속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오염 및 훼손범위는 25층, 22층의 2개 라인이며 피보험차량이 16층에서 작업하여 집중적으로 훼손된 범위는 16층 이하 건물이나 바람에 날려 상부 층에도 영향이 발생하였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방충망 및 내부 실내까지 오일이 튀어 훼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외벽 전체에 대한 세척 및 도색과 방충망 전체 교체를 요구하여 우선 선견적을 요청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경쟁력있는 업체에 시공을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법률상배상책임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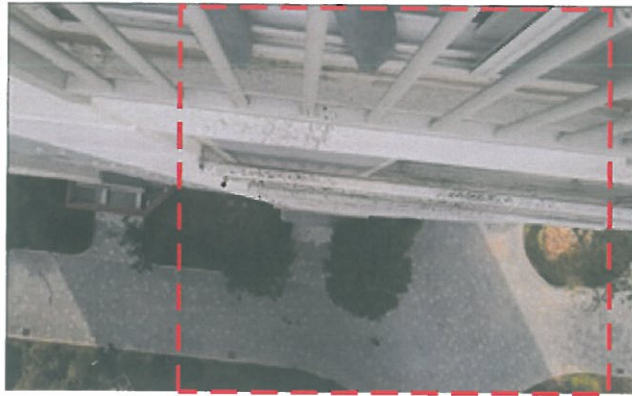
6. 면,부책 판단 근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보상범위(자동차보험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에 기인한 사고로서 대물 부책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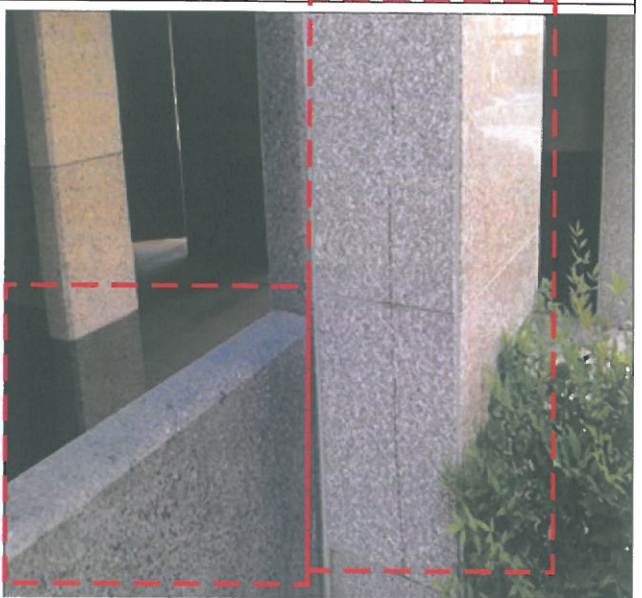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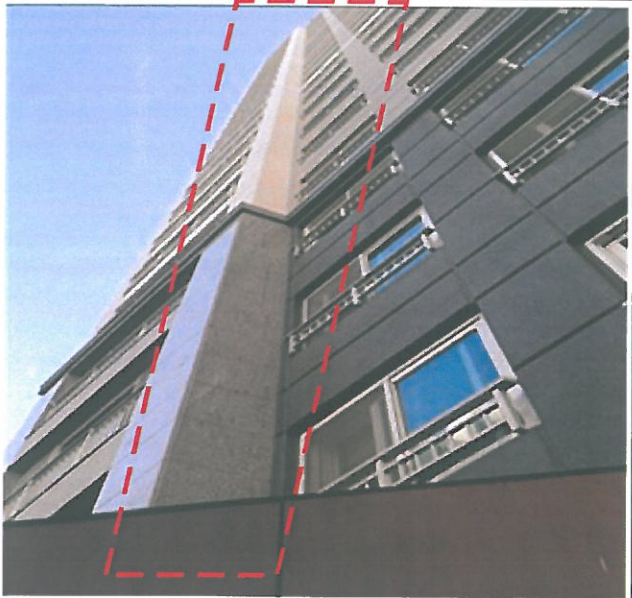
7. 피해물 현황(원경 및 상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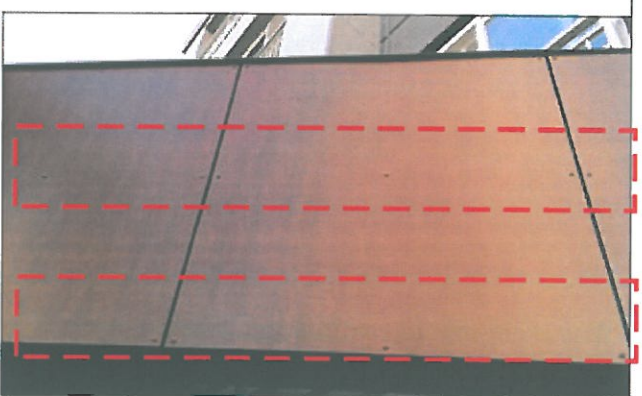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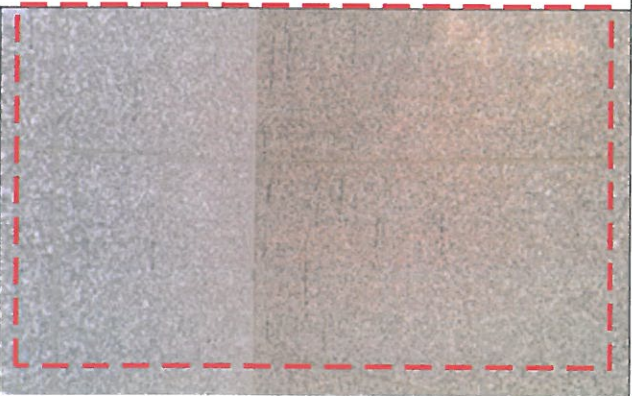
*사고현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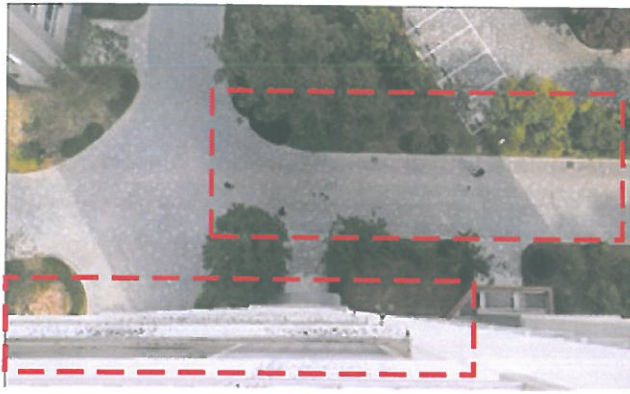
*아파트 외벽 및 베란다 창문, 방충망에 유압오일이 묻어 훼손됨



*외벽 기둥 및 대리석에 전체적으로 오일이 달라 붙어 훼손된 상태



*대리석 및 아파트 출입구 상부 훼손 상태



*아파트 외벽 및 베란다 창문, 인도 유압오일이 묻어 훼손됨



*아파트 인도 바닥 훼손상태(1)



공란

*아파트 인도 바닥 훼손상태(2)

-끝-

현장 보고서

제목 : 「중앙분리대」 사고의 현장 보고

수임일 : 2015.7.03
보고일 : 2015.7.05
조사자 : 노승일
010-9445-3290

1. 신청인

부서명	총청	센터명	서대전	담당자	박호성
-----	----	-----	-----	-----	-----

2. 사고내용

사고번호	20150701-03942-20-001	사고일	2015. 07. 01 (18:30)
피해물	중앙분리대	사고장소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논산휴게소 5km 전방)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수리업체	정현건설

3. 추정 손해액

(단위: 원)

보상한도액	청구액(A)	추정손해액(B)	비고
1억	未청구	25,000,000	0%

주1) 피해물은 중앙분리대로 피해견적 未제출 상태임.

4. 조사내용

본 건 사고는 2015년 07월 01일(18:30)경 피보험차량이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06km 지점 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차량이 기울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약 220m 정도로 밀고 나가 파손시킨 사고이며 피해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로 확인되었다.

중앙분리대 파손범위는 220m 구간이며 콘크리트 구간이 약 140m이고 철재 가드레일 설치구간은 약 80m로서 사고당시 콘크리트 구간일부는 위치변경으로 2차 사

고 위험이 있어 응급조치를 한 상태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추가사고 우려로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파손 상태는 피보험차량의 좌측 휠과 차체와의 접촉으로 부분적으로 균열되고 일부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철재 가드레일의 경우에도 사고당시 충격으로 일부는 떨어졌고 일부는 찌그러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사고 직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현건설에 시공을 의뢰하여 1차 응급조치 한 상태이며 2차 시공 시행 전 선견적을 요청하여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대하여 신속히 공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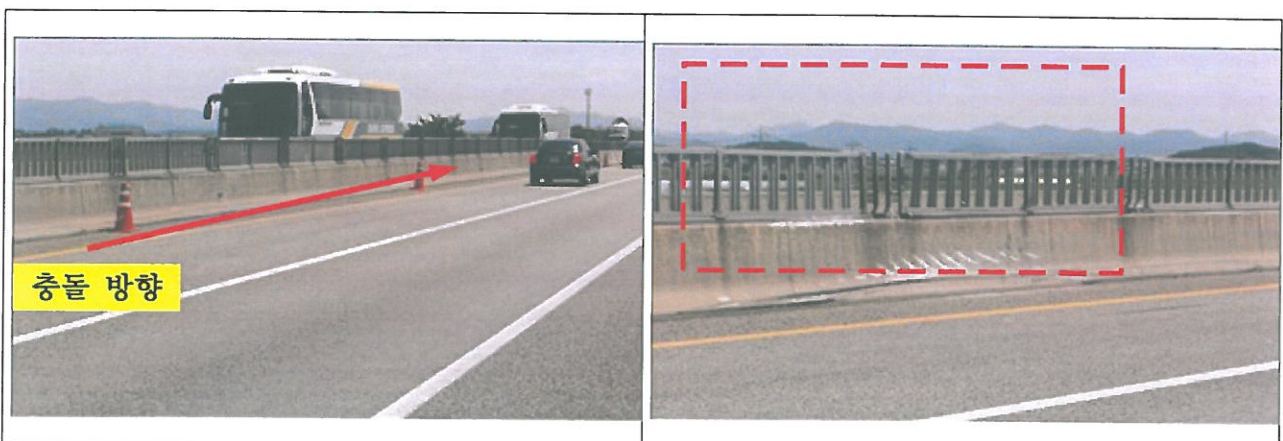
5. 향후 진행사항

중앙분리대 파손범위가 광범위하여 복구업체에 우선 선견적을 의뢰한 상태이며 현장 입회한 내용과 견적을 대비하여 사전 검증 후 신속히 시공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6. 특이사항

없음..

7. 피해물 현황(원경 및 상세 사진)



*사고구간 시발지점 확인
⇒피보험차량이 충돌한 중분대 파손범위는 220m 구간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하단, 중단부 파손(2)



*철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파손(1)



*철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파손(2)



*철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파손(3)



*철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파손(4)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하단, 중단부 파손